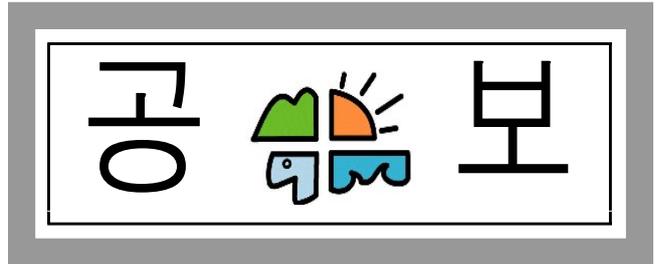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39호 2019년 12월 27일(금)

## 고 시
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..... 2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장사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... 7

## 고 시

- 공인 신조 및 폐기 등록사항 ..... 10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을 위한 행정예고 ..... 11

##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26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사업명칭 :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연립주택 신축공사

2. 사업시행자

가.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: 천마이엔씨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현묵  
나인사건설(주) 대표 김현묵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

3. 사업위치 : 속초시 장사동 649-12 외 13필지
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내용	사업비	비고
분양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지면적 : 45,772m<sup>2</sup></li> <li>○ 건축연면적 : 36,320.4955m<sup>2</sup></li> <li>○ 주 용 도 : 연립주택</li> <li>○ 층 수 : 지하1층 / 지상4층</li> <li>○ 세 대 수 : 229세대</li> </ul>	95,337,260천원	-

5. 사업시행기간 : 2020. 2월 ~ 2022. 10월(예정)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)의 결정

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[붙임1]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

7. 관계서류는 속초시 경제개발국 건축과(☎033-639-2456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.

**[붙임 1]**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44	장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-	증)47,153	47,153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44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47,15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</li> <li>-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</li> </ul>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47,153	-	47,153	100.0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47,153	-	47,153	100.0

나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①	미시령 자연경관 지구	자연경관 지구	장사동 산197입	603,707 (5,570)	-	50 (도로양안)	2007.11.2. (강고 제2007-236호)	미시 로 주변

※ ( )는 구역내 면적임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

▣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대로	1	1	35~43	주간선	12,270	대포 898도 속초시 경계	노학 산297-1임 속초시 경계	일반 도로	-	1974.8.14. (건고제272호)
변경	대로	1	1	35~43	주간선	12,270 (85)	대포 898도 속초시 경계	노학 산297-1임 속초시 경계	일반 도로	-	

※ ( )는 구역내 연장임

▣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1-1	대로1-1	◦ 선형변경	◦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출입로가 설치되는 장성천길과 미시령로(대로1-1호선)간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선형 변경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면 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	비고
		획지 번호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합 계	47,153	-		47,153	
A	45,772	A-1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45,772	공동주택용지
B	1,381	B-1	속초시 장사동 649-5번지 일원	428	도로용지 (대로1-1호선)
		B-2	속초시 장사동 649-43번지 일원	953	도로용지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A-1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 지 일원	용도	허용	◦ 「주택법」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(연립주택)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	
			불허	◦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◦ 20% 이하		
		용적률	◦ 80% 이하		
		높이	◦ 4층 이하(단,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)		
		배치	◦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		
		형태	◦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, 주현관,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		
		색채	◦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토록 계획		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단지내 조경	◦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	
차량출입 허용구간	◦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◦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	
주차장 설치기준	◦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속초 도시관리계획(장사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고시 제2019-118호(2019.12.26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장사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44	장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-	증)47,153	47,153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44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47,15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</li> <li>-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</li> </ul>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변경없음

가)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47,153	-	47,153	100.0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47,153	-	47,153	100.0	

나)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연장(m)	폭원(m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①	미시령 자연경관 지구	자연경관 지구	장사동 산197임	603,707 (5,570)	-	50 (도로양안)	2007.11.2. (강고 제2007-236호)	미시 로 주변

※ ( )는 구역내 면적임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교통시설

▣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대로	1	1	35~4 3	주간 선	12,27 0	대포 898도 속초시 경계	노학 산297-1임 속초시 경계	일반 도로	-	1974.8.14. (건고제272호 )
변경	대로	1	1	35~4 3	주간 선	12,27 0 (85)	대포 898도 속초시 경계	노학 산297-1임 속초시 경계	일반 도로	-	

※ ( )는 구역내 연장임

▣ 도로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1-1	대로1-1	○ 선형변경	○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출입로가 설치되는 장성천길과 미시령로(대로1-1호선)간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선형 변경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구 번호	면 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	비고
		획지 번호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합 계	47,153	-		47,153	
A	45,772	A-1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지 일원	45,772	공동주택용지
B	1,381	B-1	속초시 장사동 649-5번지 일원	428	도로용지 (대로1-1호선)
		B-2	속초시 장사동 649-43번지 일원	953	도로용지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A-1	속초시 장사동 649-12번 지 일원	용도	허용	◦ 「주택법」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(연립주택)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	
			불허	◦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◦ 20% 이하		
		용적률	◦ 80% 이하		
		높이	◦ 4층 이하(단,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)		
		배치	◦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		
		형태	◦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, 주현관,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		
		색채	◦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토록 계획		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단지내 조경	◦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	
차량출입 허용구간	◦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◦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	
주차장 설치기준	◦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

# 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신조 및 폐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7일

## 속 초 시 장

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

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인(전자이미지 포함) 신조 및 폐기

2. 공인명 및 인영 : 신조 2개, 폐기 1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사용일 또는 폐기일 (최초사용일)	비고
신조	속초시공보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(공보담당)		1.8×1.8cm	2020. 1. 1.	
신조	속초시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(기획담당)		1.8×1.8cm	2020. 1. 1.	
폐기	속초시기획예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(기획담당)		1.8×1.8cm	2020. 1. 1. (2019. 1. 1.)	

##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을 위한 행정예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19년 12월 23일

### 속 초 시 장

1. 목 적 :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발생시 토사호안이 세굴되어 교량 유실 우려가 있고, 교량 노후을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.
2. 행정예고 기간 : 2019. 12. 23. ~ 2020. 01. 13.(21일간)
3. 의견제출 기간 : 2019. 12. 23. ~ 2020. 01. 13.(21일간)
4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관련근거  
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)  
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 
다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

6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속초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기한 : 2020년 1월 13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33-639-2588)

라. 제출처 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)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 
(우편번호) 24826

마. 문의처 :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(033-639-2403)

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7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

지구명	위 치	지정(변경)내용				지정(변경)사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km <sup>2</sup> )			
				당초	변경		
자활1 지 구	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006-146번 지 일원	유실 위험	가	0.003	0.005	○ 자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(변경)하고자 함	

- 붙임 1. 지형도면 고지도 1부.  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